

「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- 현행 「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」의 재검토기한 도래('22.12.31)에 따라 개선사항 개정 및 재검토기한 변경('23.1.1.기준 3년)

### 2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성명(기관, 단체의 경우 그 기관, 단체명과 부서명, 직급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| 개정안 | 수정안 | 의견 |
|-----|-----|----|
|     |     |    |

다. 의견 보내실 곳

- 1) 소속 :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
- 2) 주소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
- 3) 전화/팩스 : 044-201-4753 / 044-201-5574
- 4) 이메일 : hhh2165@korea.kr